

제28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 총무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3년 4월 26일(수)
- 장 소 : 총무경제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안양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양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4.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양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7.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심사된 안건

1. 안양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김경숙·정완기·김정중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 3면
2. 안양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동훈 의원 대표발의)(이동훈·윤해동·장명희·박준모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 3면
3.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면
4.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면
5.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면

2 (제283회-총무경제위 3호)

---

- 6. 안양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 3면
  - 7.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면
  - 8.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 3면
-

(10시 17분 개의)

○위원장 박준모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안양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김경숙·정완기·김정중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2. 안양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동훈 의원 대표 발의)(이동훈·윤해동·장명희·박준모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3.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안양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7.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시장 제출)

(10시 18분)

○위원장 박준모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안양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항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4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안양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제7항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경숙 의원님 앞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존경하는 박준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김경숙 의원입니다.

저와 정완기 의원님, 김정중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같이 주최·주관자 없이 다중이 모이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주최·주관자 없이 다중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안전관리기준 적용을 위한 옥외행사 참여인원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5조에 주최·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주최·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준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안양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준모** 김경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장명희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희 의원** 존경하는 박준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장명희 의원입니다.

이동훈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저와 윤해동, 박준모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안양시의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등을 전자파의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련 시설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지정된 전자파 안심지대를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전자파 안심지대 시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전자과 안심지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준모 장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창섭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예산법무과장 이창섭입니다.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제정이유는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금년 6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안양시 조례에 기재된 만 나이 규정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6건의 조례에 표기된 “만” 용어를 일괄 삭제하는 것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중 단순한 표현, 자구 표현과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 해당해서 생략하였습니다. 아울러 일괄개정을 위하여 전 부서를 대상으로 의견조회는 거쳤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준모 이창섭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문규 총무과장 이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안양시 행정

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개정사유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공무원 정원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의회사무기구 정원을 37명에서 42명으로 증원하여 공무원 정원 총수를 2천 38명에서 2천 43명으로 5명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부칙 제6조에 따라 2022년 1월 의원정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5명을 증원하였으며 금번 개정을 통하여 2분의 1 범위에서 5명을 추가로 증원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신설하여 행정능률 향상 및 주민편의를 증진하고자 하였으며 상위법 제·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명확성을 높이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에서 구청

장 소관의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3조에서 구청장 위임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별표1 징수과 소관 중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위임사무의 근거법령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별표1 기후대기과 소관에서 고압가스 운반 및 수입업자 등록 사무와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설치·검사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하였으며 안 별표1 녹지과 소관에서 상위법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가로수 관리에 관한 사무의 근거법령을 정비하였으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숲길 관리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준모 이문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교동 자치행정과장님 나오

셔서 「안양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자치행정과장 추교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모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양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제정이유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민관협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체계구축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안양시 시민참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민관협치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의 주요 권한 및 기능을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장은 “시민의 권리와 의무”,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고 제2장은 위원회의 기능 등으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평가, 제도개선과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조사·연구, 토론회 개최 등 의견 수렴과 공약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심

의·조정된 사항을 시장에게 권고할 수도 있고 공론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토론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의 수는 60명 이내이며 위원 대상은 민관협치 소관부서 국장, 공개모집에 따라 선정된 시민, 안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안양시의회 의원,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다양한 의제가 반영된 분과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제3장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제도개선과 정책평가, 시민참여 확대 노력 등 민관이 노력해야 될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1억원 미만으로 주요사업은 회의 참석수당과 협치 토론회 운영비, 민관협치 기본교육, 민관협치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제정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3월 2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총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 2건은 반영을 하였고 1건은 미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준모** 추교동 자치행정과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경호 안전정책과장님 나  
오셔서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  
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안전정책과장  
박경호입니다.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  
명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자율  
방재단 소집 수당 지급기준과 방법, 절  
차 등 시행령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자  
율방재단 활성화를 통해 재난의 예방·  
대비·대응·복구 등 안전관리 체계를 확  
립해 가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3조 제3항과 제4항  
을 신설해 소집 수당을 9급 일반직공무  
원 시간외수당 단가를 적용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급방법은 시간

단위로 계산해 1일 8시간 범위에서 지  
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만 특별재  
난지역 선포 시에는 8시간을 초과해 지  
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수반사항입니다. 그동안  
의 활동실적을 참고하여 해당 활동시간  
평균 2시간과 대원 수 365명, 소집횟수  
5회 정도를 감안하면 3천 511만 3천원  
정도 예상됩니다. 아울러 개정조례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월 14일  
부터 3월 7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  
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준모** 박경호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배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회계과장 김용배** 회계과장 김용배입  
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 상정하는 “「안양1번가 청년공간 조성-건립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취득재산은 건물 1개소 안양동 674-207번지 769.88제곱미터, 46억 6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안양1번가 청년공간 조성사업은 구 안양1동 주민센터 부지에 청년 문화·예술·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9년 지상 3층, 건축 연면적 626.67제곱미터 규모의 건물 신축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의결하였으나 심의 시 청년공간을 조성하는 공간의 공간이 협소하다는 의견이 있어 지하층을 추가한 지하 1층, 지상 3층, 건축 연면적 769.88제곱미터 규모로 확장 건립될 예정이며 사업비는 당초 22억 4천 400만원에서 24억 1천 800만원이 증액된 46억 6천 2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준모 김용배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겠습니다.

김옥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옥분 총무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옥분입니다.

「안양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안양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같이 주최·주관자 없이 다중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최·주관자가 없지만 다중이 모일 것으로 사전 예측될 경우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주최·주관자가 없는 행사는 결국 관련 부서를 특정하기가 어려운 경우로서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등 부서 간 업무조정에 따른 갈등과 분쟁이 예상됨에 따라 사전에 다중 밀집이 예측되는 행사의 성격,

장소,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관된 부서들 간 소관부서 지정이 선행되어야 안전사고 위험 사전신호 감지 시 철저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위험상황 조기 파악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인파 밀집사고 재발방지 대책과 함께 국가안전시스템 전반을 개편하는 범정부 종합대책을 수립 중에 있어 향후 다중 밀집이 예상되는 행사의 위험상황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최·주관자가 없는 행사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상위법 개정 및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등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마련될 경우 향후 본 조례의 추가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토결과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쪽, 「안양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 검 토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안양시의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등을 전자파의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련 시설을 전자파 안

심지대로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구역 및 관리할 수 있는 사항, 전자파 안심지대 시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 수립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설치·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총 42개소이며 이 중 9개소가 단독건물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본 조례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며 최근 갈등을 빚고 있는 데이터센터 건립, 특고압선 매설 추진 등으로 주민들이 전자파로 인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제정안은 법령 및 위임사항이 없어 적용범위, 의무규정 등 제도 마련에 다소 한계가 있으나 시민들을 전자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환경 조성 및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향후 전문기관,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상위법 제정 등 중앙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법 제도가 마련되어 전자파로 인한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전자파 노출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며 검토결과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18쪽,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검토의견입니다.

### 검 토 보 고

이 일괄개정조례안은 만 나이 통일로 법령, 문서 등에서 계산법 혼용으로 발생하는 혼란을 해소하고 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원칙을 확립함으로써 행정의 통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만 나이 사용 문화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각 학교, 공공기관, 기업, 사회단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결과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절하게 구성되었고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24쪽,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검토의견입니다.

###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사무국에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 5명을 증원하고자 공무원 정원에 반영하고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정책지원관이 증원됨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서 규정한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 정책지원 전문인력 지원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를 비롯한 입법활동, 예산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 등의 의정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심도 있는 정책발굴 등 의원의 정책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검토결과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34쪽,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검토의견입니다.

###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시장의 권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기존의 위임사무 중 상위법 및 관련 조례 제·개정으로 변경된 근거법령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임사무의 근거법령 정비 및 시장의 권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편의 증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검토결과 인용조문 등이 적절하게 구성되었고 상위규정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40쪽, 「안양시 민관협치 활성화 위한 기본 조례안」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검토의견입니다.

### 검 토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 확대 및 민관협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체계 구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시민참여위원회가 2018년 조례 제정 이후 시정 자문기구 역할을 해왔으나 민관협치를 통한 문제해결 방식이 중요해짐에 따라 민관협치위원회로 기능을 강화하여 민관협치 체계 구축 및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민관협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시가 민간과 협력하여 정책 수립·집행·평가하는 과정에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시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관협치위원회 위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협치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는 전문가의 위촉이 필요할 것이며 시정에 다양한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고 민관협치를 통해 결정된 정책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실질

적인 노력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결과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54쪽,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 검토의견입니다.

### 검 토 보 고

2020년 6월 16일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자율방재단이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집된 경우 소집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되어 후속조치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지역자율방재단 조례 참고안’을 준용하여 본 조례개정안에 소집 수당 신설 및 지급기준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자율방재단 활동비는 재난 여부와 상관없이 1일 4시간 미만 활동 시 1만원, 4시간 이상 활동 시 2만원을 지급하여 왔으나 소집 수당은 평상시 방재활동에 참여한 자율방재단에게 지급하는 활동비와 달리 호우, 산불, 폭염, 수해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소집되어 임무를 수행한 경우 지급하게 되며 일반직공무원 9급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지난해 8월 우리 시에 발생한 수해와 같은 재난 발생 시 소집되어 임무를 수행한 자율방재단에게 소집 수당 지급이 가능하게 되며 복구, 구호활동 등의 참여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 단원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비상시 소집하는 경우와 평상시 일반 방재활동과는 임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수당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재난 시 실질적인 활동이 가능한 사람으로 자율방재단 정비 및 명단 현행화가 필요하며 재난 발생 시 복구작업 등에 참여하는 사회단체, 일반시민 등 다른 자원봉사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활동 임무의 차별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결과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62쪽,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변경안의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 검토의견입니다.

### 검 토 보 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변경안은 2019년 12월 20, 시의회에서 의결된 안양1번가 청년공간 조성사업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규모가 협소하다는 의견에 따라 사업규모가 일부 증가되었고 특히 사업비가 당초계획보다 30퍼센트를 초과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4호에 의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양1번가에 건립을 추진하는 청년공간은 청년들이 언제든지 서로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자유롭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진행되었으나 그동안 반대민원 등으로 당초계획보다 사업추진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우리 시에 청년들을 위한 문화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건립규모 확충 및 공사단가 상승 등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사업효과 등을 감안하면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어야 하며 공사 지연 등으로 인한 공사단가 상승 등 사업비가 추가 증액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제출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 일부개정안 등 8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안양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안양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안양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준모 김옥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하고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 위원 강익수 위원입니다.

이 질의는 우리 과장님한테 드리는 건가요?

○위원장 박준모 허재영.

○강익수 위원 허재영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이것 지금 우리 안양이 직면한 초고압선 지중화공사랑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우리 안양이 이렇게 선제적으로 방향을 잡아주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자파 안심지대 적용범위에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를 제외하고 유치원이나 초중고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지금 조례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면 특히 적용범위에 개인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복합건물에 위치한 경우는 적용이 배제가 되어 있고 그리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단독,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제외된다는 그런 의미 맞죠?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강익수 위원 그런데 현재 어린이집 내에서도 CCTV나 ‘키즈노트’, 기타 코딩수업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자파 발생하는 기기를 많이 쓰는데 기지국만 없다고 해서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할 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혹시?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죠.

○강익수 위원 좀 애매하신가요? 그러면 제가 다시 다른 것 질의드릴게요. 저는 사실 이게 주변에 전자파가 발생할 수 있는 기기들이 그렇게 많은데 기지국만 설치를 여기에 못 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철거를 권유하는 것으로 인해서 전자파에 대한 안심지대로 선정하는 게 의미가 있냐는 생각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특히 국공립어린이집만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만 여기에 해당된다는 게 형평성에 안 맞다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해보면 기지국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주로 통신이 안 되거나 네트워크가 안 되는 상황에 기지국을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이잖아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강익수 위원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정말 「영유아보육법」 상에 아이들을 전자파로부터의 분리, 이격을 시켜서 안심을 시키는 그게 권리가 우선일지, 나는 제대로 된 통신을 사용하고 싶다,

제대로 된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싶다는 그런 사람들의 권리가 우선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박준모 부위원장님, 이번 조례는 의원님 대표발의고 그래서 공동발의하신 저나 장명희 의원님께 질의하시면 저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게 나올까요?

○위원장 박준모 예.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운, 실무적인 부분은 과장님이,

○강익수 위원 아니면 질의가 아니라 제 의견만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박준모 예.

○강익수 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냥 무작정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에 기지국을 설치 못 하는 것만으로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어불성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더군다나 지금 제가 국립전파연구원의 발표자료에 보니까 일단 이동통신 기지국은 「전파법」에 따라서 전자파 노출량이 전자파 인체 보호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무선국 허가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물 내부로의 노출량이 작게는 10배에서 크게는 100배까지 감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자료를 보면 기본적으로 기지국을 설치할 때에 기본적인 안전한 인체에 유해

한 부분까지는 설치를 못 하도록 일단은 검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옥상에 설치를 하는데 못 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말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준모** 잠깐 답변 말씀드리면 여기서 얘기하는 “기지국”이라는 것은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여기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설치하는 소형중계기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옥상이라든가, 그리고 각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통신시설이 다 설치가 돼 있는데 그 밑에도 지금 소형중계기가 있는 데도 있고 혹은 그게 지하에 있다 보니까 아파트, 특히 고층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하에 중계기가 설치되면 그 전파 영향력이 적어서 통신시설이 좀 미비해서 옥상에다가 설치를 해달라는 그런 요청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소형중계기 때문에 기지국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중계기 설치하는 이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설치가 불가하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또 아까 어떤 부분을, 예, 장명희 의원님.

○**장명희 의원** 사실 이 조례가 이렇게 제출된 것에 대한 배경이나 이런 것은 문제의식은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다만 아이들이 사실 전자파에 대한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부모들 입장에서 전자파에 대한 안심, 제도적인 어떤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고요. 이게 경기도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익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의” 부분에서 ““어린이집”이란 안양시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이게 사실은 국공립만 해당이 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셨잖아요? 이것은 경기도의회에서는 제가 찾아보니까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이다 포함이 돼요. 그러면 민간 이런 것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무효 판결을 받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이게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고 사실 공립은 지자체 공유재산이어서 근거가 될 수 있는데 사립유치원과 개인이 소유하는 복합건물은 조례에 위임하는 법령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들이 위헌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조례에 국공립으로만 들어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사실 효과성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안양시에 갖는 선연적인 의미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양에서 이렇게 전자파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이 의회에 있고 선제적으로 이런 조례를 발의를 했다, 이 점을 좀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장명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강익수 위원님, 허재영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만 나 이 통일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사무위 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 의하실 위원님께 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민관협 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 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6항 나왔는데 빨리 질의하세 요.

예,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아마 다른 위원님들은 더 세계 질의하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 아요.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올라왔는데요. 사실 이 협치라는 게 거 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이기도 하 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전진이기도 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우리 행 정에서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 게 보면 굉장히 필요한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 을 합니다. 다만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 해서는 우리가 기존에 시민참여위원회를 운영을 했지만 기존 방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동적으로 집행부의 정책을 자문하고 거기에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수동적인 방식에서 조금 더 역량을 확 대해서 민관협치의 기본적인 가치가 있 죠 않아요? 주민들의 문제를 선제적으로 발굴을 하고 그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하 면서 마을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축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 니다. 지금 민관협치가 잘되고 있는 다 른 지자체들은 그렇게 가고 있고요. 사 실 공동이 느끼는 문제를 민관협치에서 해결을 하고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보 는 그런 과제들을 스스로 성취를 해야 주민들이 마음을 열고 민관협치에 참여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위원회 전체 위원 수가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는데 사실 저는 이 규모가 우리 인구 수 대비 조금 과도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광역 같은 경우 충남은 30명, 서울 25명이구요, 경기도에서도 우리보다 인구수가 많은 용인, 성남 다 30명 내외로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관협치위원회 60명을 운영을 한다는 것은 사실 분과위원회 이야기도 있지만 수당도 나가고 어느 정도 운영에 대한 운영비용이 들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인원수에 대한 논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성 및 운영”에서 9조4항에 1호 보면 “공개모집에 따라 선정된 시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해야 되는 것에 저는 적극 공감을 하는데 여기 조항에 ‘협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지가 있는 시민’ 이런 식으로 조금 의지를 넣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업추진 및 지원”에 20조에 4항을 보면 “협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위원회 및 민·관·산업체·학교 등 협력 기관·단체 소속의 협치 담당자 연수, 국·내외 사례현장 견학 사업” 이 조항은 조금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리고 선례도 없습니다, 다른 타 지자체들 조례를 제가 보니까 이런 부분이 이렇게 명문화돼서 들어간 조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구는 좀 삭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장명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과장님 조례를 살펴봤는데요 사실 우리 장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관협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가치고 우리가 안양시정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게 작용해야 되는 원칙이라는 데에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조례 제정에 제가 나름대로 역할을 했었는데 저도 이 조례를 만들면서 당시에 이런 얘기를 썼었어요. 우리 안양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정책 이런 것들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민관의 협치결과가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제가 실제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을 갖고 이런 조례를 넣었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 집행부에서 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셨던 부분이었어요, 당시에. 그런데 그만큼 집행부에서 조심스러워하셨던 것은 민관협치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추상적 개념으로만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시민들께서 시정에 대해서 보다 많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그 효능감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촘촘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건데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사실 그런 느낌은 잘 못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할 때 목적, 정의, 기본원칙 그리고 기본계획이나 사업내용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편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네다섯 가지의 조항에 실제로 우리 안양시가 민관협치를 통해서 무엇을 달성하고자 하는지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하고 실제로 어떻게 우리 업무에 연계를 시킬 것인가가 이 조례에서 보여야 되는데 저는 그런 게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게 이 조례가 가진 맹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17조에 보면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계획에 보면 그냥 너무 당연한 얘기 있어요. 기본계획이니까 민관협치에 대한 기본방향을 넣는 것 맞고요 그리고 정책목표 추진 계획 넣는데 그 외에 우리 안양시가 민관협치에 대해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설계를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통상적으로 만드는 다른 조례랑 비교를 했을 때도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허술하게 지금 조례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지우기가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추진도 사실 눈에 떨 만한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봤을 때는 우리 장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 살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여쭙볼 게 20조에 보면 “회의장소의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혹시

저희가 사무실을 별도로 제공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통상적으로 정기 회의를 할 때 회의할 수 있는 장소를 시에서 제공하겠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후자 쪽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김도현 위원** ‘후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답변을 주셔야죠.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후자 쪽입니다.

○**김도현 위원** 후자 쪽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예.

○**김도현 위원** 예. 그래서 이게 별도의 사무실이나 이런 것들을 혹여나 계획을 하고 계시다면 그런 내용들도 조례나 이런 부분들에 명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사실 시민참여위원회 때도 마찬가지로 1년에 한 두 차례 회의를 해가지고, 실제로 보면 여기 이렇게 내용이 돼 있습니다. ‘민간과 시가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평가하는 시정운영 방식 및 체계’라고 되어 있고 실제로 60여명의 위원을 선임을 하시는데 1년에 두 번 저희가 모여서 가능할까, 실질적인, 이게 ‘공동’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과 시가 공동으로 권한과 책임을 나눠 갖는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공동으로 나눌 수 있을 만큼의 깊이 있는 숙의과정과 상호 간의 이해와 우리 시민들의 동의

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민관협치라는 게 두 번의 회의를 통해서 달성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도 제가 볼 때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공동으로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관협치라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가치일 수는 있겠으나 추상적으로 접근할 단어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보면 민간과 시가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합니다. 공동으로 집행도 하고요 공동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와 민간이 공동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우리 시의 정책을 집행할 수도 있다는 게 지금 이 조례에 들어가 있다는 건데 실제로 그렇게 집행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시스템과 의지와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 동의가 집행부 안에 이루어져 있는가. 저는 아직 그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저희가 대안이나 장치들이 그렇다면 이 조례에 보여야 되는데 조례 안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발견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지금 보면 8조에 “심의·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희가,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김대일 과장님도 계신데 청년정책위원회가 사실은 그냥 정책위원회 그러니까 심의·자문기구였다가 청년정책조정위원회라고 해서 실

질적으로 우리 안양시의 청년정책에 관해서는 부서 간 업무 조율부터 시작해서 정책의 틀걸이부터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직접적으로 부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조정’이라는 단어는 생각보다 저는 그 힘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이 민관협치라고 하는 것은 범위가 제한된 게 아니라 우리 안양시의 모든 행정에 있어서 공동으로 그리고 모든 행정에 있어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조례 상으로 해석을 보면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보는데 실제로 ‘그게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게 조례의 틀 구성만 봤을 때는 심의·조정할 수 있는 기구나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구는 아닌 것처럼 보여져서 사실상 심의·자문기구가 맞는 것 같고 제8조5호에 보면 “공약추진에 관한 사항 및 주요 정책 자문”이라고 또 여기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공약추진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또 아닐 것 같은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문기구가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한편으론 들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회는 심의·조정된 사항을 시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권한이거든요? 실제로 업무를 조정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앞에 나온 내용처럼 공동으로 집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앞의 얘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시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권고는 받아들이면 그만이고 아니면 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저는 좀 상이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조례 구성이 전체적으로 조금 엉성하게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여러 가지 숙의과정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60명으로 위원을 구성을 하는데 “위원 총수의 청년비율이 10분의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명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성인 기준으로 이·삼·사·오·육십 대라고 했을 때 비중이 좀 낮지 않나라는 생각 또한 듭니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 청년을 몇 명으로 규정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도 조금은 위험할 수 있겠으나 어쨌든 세대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이게 돼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민관협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양시정 전반에 걸친 여러 가지 사업들과 행정을 이야기하는 곳이고 그렇게 되면 다양성을 가진 시민들이—세대 다양성을 포함해서요—다 들어오셔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청년비율이 10분의 1”, 이게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냥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더 많이 하실 수도 있겠으나. 그래서 세대 균형에 대한 노력도 필요해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게 여기 17조에

보면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4년마다 하신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4년마다 이렇게 정한 이유는 위원회 임기가 2년이지 않습니까?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4년이란 기준 잡았고요. 통상 도시계획이나 이런 데는 5년으로 기준 잡는데 그것은 동안구청 기준 부분을 참고해서 잡는 것 같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그래서 저는 민관협치 조례가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의합니다. 그리고 민관협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크게 공감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필요한데 지금 나와 있는 이 조례는 사실 지금 이 자리에서 일일이 제가 말씀드리면서 하나하나 수정을 하고 또 여기에 계신 다른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고 양해를 구하기에는 ‘이게 지금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에 이렇게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조례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원론적으로 좀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건들에 대해서 제 질의에 대한 마지막 답변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설명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김도현 위원님의 좋으신 말씀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이 조례안은 약간 선언적인 부분이 좀 많이 담겨있다는 부분은 제가 부인할 수 없고요. 저희가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에 따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제가 다 잘 기록을 했는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행규칙을 마련할 때 담을 수 있는 내용들은 최대한 담아서 보완하는 방향으로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도현 위원** 그런데 규칙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사실 기본 틀걸이 자체가 오류가 없고 해석에 상반됨이 없고 그리고 모두가 이 조례에 대해서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동의했을 때 시행규칙이라는 것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 자체에 대한 저희가 좀 숙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그리고 예산수반사항이 지금 얼마죠? 9천 550만원 잡혀 있는데 지금 저희 행정위원회가 우리 시에 한 180여 개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사용하는 위원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회의 참석수당이나 일반교육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게 실제로 어떤 산출근거를 통해서 예산이 9천 550만원이 도출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도 저희한테 조금 공부를 해주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예산은 저희가

꼼꼼하게 따져본 사안이고요 시민참여 위원회 때 집행했던 예산보다는 적은 비용입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김도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저희 모든 위원님들이 좀 우려하시는 부분이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하는 부분이 아마 장명희 위원님이랑 우리 김도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어느 정도 겹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렇게 대의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우리 시민참여, 특히 민관협치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어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다 생각을 하고 특히 이번 조례 내용 중에 우리 이동훈 의원님이 발의한 청년 인원수를 어느 정도, 10퍼센트 정도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은 청년특별시를 추구하고 있는 안양시의 입장에서는 정말 잘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조례 제정에 대한 상위법이 뭐죠?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상위법은 딱 연결된 상위법은 없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한다고 봐야 되겠죠.

○**강익수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안에 봤을 때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

는 바에 따라서 자문기관,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시민참여위원회잖아요?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그렇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런데 이 조례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참여위원회가 가지고 있던 시정시책에 있어서 제안·권고·자문하는 역할을 지금 이 조례로 본다 그러면 공동의 정책 결정, 집행, 평가까지 하는 시정 운영방식으로 바꾼다는 건데 이게 기본 골자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그렇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면 권한이 「지방자치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권한보다 훨씬 더 크게 부여를 하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그렇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데요. 사실 법안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따로 저희가 조례로 만들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법안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들의 권익이나 이익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하게 되는데 어쨌든 '심의'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보면 상세하게, 치밀하게 토의한다. 그러니까 결정권 없이 토론만 한다, 이렇게 사전적 의미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또 '조정'이라는 부분도 아까 김

도현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 하여튼 조정이라는 의미도 사전적으로 보면 어떤 기준이나 실정에 맞게 정돈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우려하는 부분 이상으로 이게 의원님들의 권한이나 입지를 침해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방자치법」에 근거한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딱 이렇게 명시된 조항은 없습니다마는 시민들을 위한 권익이나 이익을 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운영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제일 우려가 되는 부분은 우리 김도현 위원님도 계속 아까 말씀하신 게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민관협치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정책 결정, 집행 그리고 평가까지 하는 기구가 만들어진다면 우리 시장님이 집행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시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기능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제는 자문기관이 아닌 견제수단이 없는 거대한 공룡조직 하나 만들어진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은 협치, 거버넌스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높아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래서 시민참여위원회 같은 경우도 사실 심의·조정을 안 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조정도 했었고요 또 시장님 공약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자문을 넘어서 심의·조정까지 했던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새롭게 신설되는 민관협치 위원회도 자문을 넘어서, 자문은 말 그대로 그냥 의견을 묻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넘어서 심의할 수도 있고 조정할 수도 있는 권한까지 부여를 해야 진정한 거버넌스 취지에 맞는 시스템으로 작동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저희 입장으로 한번 말씀드려봅시다.

○**강익수 위원** 네. 과장님 마지막으로 조례 심의가 열리기 전에 제가 먼저 담당부서에 질의를 던졌을 때 시민참여위원회가 민관협치위원회로 바뀌었을 때에, 아니면 시민참여위원회에 대한 현재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한번 여쭙봤었는데 순기능이라고 생각했던 게 ‘대의민주주의의 합치’하고 ‘폭넓은 시야’를 갖게 되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고 ‘안정감 있는 행정’으로 자치행정과에서는 선정을 했더라고요. 이게 우리 시민참여위원회의 설치·운영 목적이 맞죠?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맞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런데 이제 자문 그런 심의가 아니라 결정, 집행, 평가까지 한다 그러면 정말 더 갈등을 조장하고 신

속한 정책집행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어쨌든 이게 전 분야에 걸쳐서 한나라기보다도 민관협치에 관한 게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저희가 판단이 되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저희 집행부의 환경도 변화가 필요하고 또 종전에 시민참여위원회에 자문으로만 되어 있던 그러한 근본적인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해서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부분은 저희가 가지고 있고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일단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잠시 후 정회 때 제가 다시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한번 제정을 할 때에 제대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강익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제가 하나만 여쭙볼게요. 원래 이것 민관협치 조례가 의회에서 처음에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었던 거잖아요? 사실 작년부터.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민관협치위원회가 시민참여위원회 그때부터,

○**김도현 위원** 아니, 그것 말고 민관협치 조례 제정하는 게 사실 이번에 9



대 의회 들어와서도 작년부터 여러 의원님들께서 민관협치 조례 제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 토론을 내부적으로 주고받고 있는 것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그때 조직 개편이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김도현 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원래 의원 발의로 계속 준비를 하려고 했던 것들을—의회에서—집행부 발의로 준비하시게 된 혹시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이동훈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의원 발의로 처음에 진행을 해왔었는데 어쨌든 시민사회에 관한 부분들이 집행부와 연결성이 많고 또 접촉성 또는 근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하는 것보다 시에서 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부분을 최종적으로 이동훈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셔서 가지고 저희가 발의하게 됐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아니 사실은 이동훈 의원님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이동훈 의원님을 비롯해서 사실 많은 의원님들이,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예, 맞습니다, 여러 의원님이.

○**김도현 위원** 예. 민관협치 조례의 제정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할 하고 내부적으로 계속 숙의과정을 거치고 있었던 중이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아까 계속 드렸었던 것도 이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 있는 여러 의원님들이 충분히 공감도 하고 계시고 그 조례에 대해서 기본적인 준비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었었는데 사실은 집행부 발의로 민관협치 조례가 조금은 급하게 올라온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게 이렇게 조금 서둘러서 올라와야 되는,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다고 민관협치 조례를 마냥 내버려 두고 그냥 세월가는 것 지켜보면서 그렇게 할 마음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이것을 집행부에서 저희가 느끼기에는 다소 급하게 올리셔야 했던 다른 이유가 좀 있는지 싶어서 여쭙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은 사실 전신이 시정조정위원회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가 시민참여위원회로 바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어서 후속으로 민관협치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건데 말 그대로 시정조정위원회가 역할이 시정의 모든 업무나 계획을 다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중차대한 일을 다루는 위원회가 벌써 3월 28일 자로 기존의 시민참여위원회가 최종 정기회를 끝으로 소임을 다 마쳤는데 계속 중단될 수 없는 상황이 있고요. 위원회는 구성이 돼서 시정의 중요사항들을 자문 내지는 조정해 나가는 그러한 역할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백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회기 때 상정을 하게 되었고 또 제 바람입니다

마는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시정에 공백 없이 잘 유지가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도 이해하고요 일견 동의하는 부분도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딱 여쭙게요. 예전에 ‘시정조정위원회’였었고요 그다음에 ‘시민참여위원회’로 바뀌었고 그리고 또 이게 ‘민관협치위원회’로 어떻게 보면 확대개편되는 이런 과정들 속에서 이게 물론 공백 없이 잘 바로바로 임기가 종료됨과 동시에 새로운 기구가 출범을 하고 이런 것도 바람직한 모습일 수 있겠으나 하나의 어떤 위원회가 소임을 다 하고 폐지될 때 그것에 대한 우리 안양시민들의 좀 객관적이고 냉철한 분석을 통해서 그다음을 준비하는 시간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한편으로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언제까지 계획을 하고 구상을 하고 실행을 해야 되는지 저희 시 집행부로서는 의문점이 있고요. 어쨌든 저희 입장으로는 중단 없이 위원회의 기능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저희가 좀 중요하게 판단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김도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 위원** 과장님,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많이 제시해주셨는데 “정의”에 보면 여기서 민관협치에서 ‘민’은 대부분 다 어디예요? 안양시민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시민을 포함한 모든 분야의 대상이 되겠죠. 시민단체도 포함되고.

○**정완기 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게 뭐냐 하면 다른 데는 참여율이 몇 퍼센트로 다 정했잖아요. 당연직은 30퍼센트, 위촉직, 성별 60퍼센트 초과, 청년도 이렇게 다 정해놨는데 여기 시민이란 ‘관할구역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 관내의 사업장을 둔 사람, 관내 재학 중인,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인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라든가 안양시의 돌아가는 것 모든 전반적인 사항을 봤을 때는 안양 시민, 안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70퍼센트 이상 뒤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나는 이것 퍼센티지를 뒤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예를 들면 재난지원금 관내 사업장, 법인 등록 이렇게, 외부 사람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해놔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이것 다른 데는 다 퍼센트 정했잖아요? 안양시민이 최하 주소지를

둔 것을 한 70퍼센트는 뒤야 되고 30퍼센트는 아까 말씀대로 관, 법인 등록, 재학 중인 학생 이렇게 해도 되는데 ‘최하 70퍼센트는 뒤야 된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그 부분은 지금 조례에 다 담을 수 없는 특성도 있고 해서 그것은 시행규칙 마련할 때 고민해보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예. 이따가 정회시간에 상의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 안건 많이 주셨잖아요?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정완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이야기 주고 계신데 사실 시민 참여위원회가 기여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 좋은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또 그 부분에 있어서 걱정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옥상옥으로 기능을 한다든가 자문기구로 위상을 과도하게 갖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걱정되시는 것 같고.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위원 해촉, 12조에 보면 여러 가지 해촉 사유들이 나열돼 있는데 6항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여기에 혹시 공개된 게시판이나 대

화방에서 욕설이나 헐박이나 허위사실 유포한 경우도 들어가는 걸까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그렇지 않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러면 이런 조항도 하나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조례에다가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없다는 것을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위원회,

○**장명희 위원** 왜냐면 그 선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예, 그렇습니다.

○**장명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장명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우려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들을 다 해주셨는데요 여기 참고하셔서 저기 하셔야 될 것 같고 20조에 보면 장명희 위원님이 말씀도 하셨지만 “국내·외 헐치 사례 조사, 연구”도 있고요, 국내외로 다니면서 이런 조사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러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여기 국내외 연수 여기 다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기준이 있어야지 국내외까지 이렇게 사례를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는 단체가 되면 너무 방대해지지 않나. 어떤 면에서 예산이라든가

지원 같은 것도 너무 커지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우리도 국외 연수 갈 때 외유성 논란에 말이 많지만 이것도 그러한 외유성 논란의 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아무튼 이것은 조금 민관협치단체에다가 국외로 가는 것은 선심성이 좀 포함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 보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없어요, 다른 지자체에는. 그것도 감안 하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김경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공유 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진행

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로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전자과 안심지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강익수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예, 강익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강익수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일부 조항이 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준모 방금 강익수 위원님으로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강익수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교동 자치행정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장시간 동안 많은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집행부서도 위원님들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한 점 담당 과장으로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민관협치위원회가 구성이 될 건데요. 어쨌든 소통과 협치에 관심이 많은 다양하고 참신한 위원님들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무튼 새롭게

<참 조>

출범되는 민관협치위원회가 우리 민선8기 시정에 도움이 되고 지역의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협조와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익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예, 김도현 위원님.

○ **김도현 위원** 장시간에 걸쳐서 저희가 「안양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토론과 여러 가지 우려되는 지점들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또 지혜를 모으는 시간을 좀 가졌는데요. 우선 저희 여러 가지 논의과정이 있었고 좀 길어지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우리 안양시정에 민관협치가 필요하고 그리고 민관협치를 통한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시대적인 사명일 수도 있다. 그리고 시대정신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다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그런 민관협치의 정신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을까를 저희가 좀 치열하게 논의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례를 반대하고 조례를 저희가 임의로 수정하기 위해서 시간을 허비한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이 조례의 취지를 잘 살리는 방향이 어떤 것일까를 치열하게 고민하는 시간이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도 감사할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정회 중에 여러 가지 토론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집행부에서 당초에 제출해주셨던 조례안 초안 같은 경우는 조례 자체를 구성함에 있어서 저희 의회를 비롯한 여러 당사자들의 충분한 숙의과정이 없었던 것은 다소 아쉽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향후에 특히나 우리 자치행정과는 시민사회, 공익활동, 민관협치 이런 다양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와 업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런 속의과정에 대해서 향후에 조금 더 꼼꼼하게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조례 자체에 민관협치에 대한 우리 시만의 통찰과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아쉬운 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위원들의 다양성 그리고 공정성 이런 것들이 충분히 담보될 수 있는 장치가 조항에 없었던 것들도 다소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향후에 구성하시는 과정에서 의회와 충실하게 소통하셔서 위원회가 구성되고 나서 사업이 추진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좀 각별한 소통을 부탁드립니다. 또 기본계획안을 지금 이미 어느 정도는 구성을 해서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안은 말 그대로 안이니까요 우리가 이 민관협치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구현하고자 하고 또 민관협치위원회를 통해서 어떻게 시정을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지에 대한 그런 다양한 기본적인 계획들을 의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긴 시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민관협치위원회 저희 의회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보고 있고 또 관심 갖는 조례라는 것 꼭 명심하셔서 민관협치위원회 그리고 기타 민관협치 업무를 추진하시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김도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당부 말씀 하실 위원님 계세요?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 위원** 정완기 위원입니다.

아까 장시간을 민관협치 조례안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여러 논의와 논쟁이 있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집행부에 아까 김도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꼭 해주셨는데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의회하고 소통이 너무 부족했다. 앞으로 조례안 하나도 충분히 소통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진다. 소통이 이어지고 오늘 조례안 통과로써 보여지는 위원 선임 또 앞으로 추경예산도 아마 반영이 돼야 될 거고 기본계획 수립안도 아마 성립이 되는데 그전에 이렇게 이루어질 적에 우리 충무경제위원님들과 충분하게 소통하고 논의하고 그렇게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니라 반드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잘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꼭 소통해주시고 하시기 전에 꼭 이런 논의가 추후에 위원회 선정부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충무경제위원회도 노력하겠습니다. 할테니 소통을 꼭 먼저 선행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정완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짧게 당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장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하고 소통하면서 위원님들의 취지는 잘 파악을 하셨잖아요, 어떤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민관협치 조례가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이번에 이 조례 준비를 해오면서 조례안을 우리가 검토함에 있어서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발생이 됐고 발견이 됐고 그 부분들을 지금 수정가결 하게끔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기 전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또 못하셨던 거예요, 과장님. 저희가 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도 매번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과정들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회의 석상에서 그리고 외부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토론이 좀 더 길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부터 해서 위원회 구성부터 해서 기본계획 수립할 때부터 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소통을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예. 그리고 과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과장님들,

국장님들 사전에 이런 조례라든가 예산 심의함에 있어서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하실 얘기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의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산회)

○**출석 위원 6인**

박준모 강익수 김경숙 정완기  
장명희 김도현



○출석 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옥	분
사	무	직	원	차	주	필
속	기	사		김	현	정

○출석 관계 공무원

청	년	정	책	관	김	대	일	
기	획	경	제	실	장	이	병	준
안	전	행	정	국	장	황	인	섭
예	산	법	무	과	장	이	창	섭
회	계	과		장	김	용	배	
총	무	과		장	이	문	규	
자	치	행	정	과	장	추	교	동
안	전	정	책	과	장	박	경	호
정	보	통	신	과	장	허	재	영